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1차 정례회

검토 보고서

2023. 6. 13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	신종갑 의원 외 7명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
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신종갑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74)

2. 제안이유

-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,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(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23. 5. 18. ~ 5. 23.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하였고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5조~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,
 - 안 제7조~제8조까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추진사업을,
 -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, 보육교사의 권리는 교육권과 보육교사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, 경제적 권리, 기본적 인권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.

-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증진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과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.
- 지금까지 보육현장에서의 인권 및 권익은 교육의 객체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, 이제는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, 본 조례 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4항은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.
또한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개별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보육진흥원 ‘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’(2021년)를 보면 보육교사의 68.3%가 마찰·갈등 경험이 있고 학부모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응답자의 대부분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음.(참고자료 2)
-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 안 제7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의·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영유아보육법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2.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

▣ 권리침해 경험유무

구 분		빈도(N)	비율(%)
권리침해	있다	299	29.3
	없다	723	70.7
전체		1,022	100

▣ 권리침해 주체

구 분		빈도(N)	비율(%)
권리침해 주체	학부모	178	59.5
	원장	149	49.8
	동료 교사	172	57.5
	기타 대상	5	1.7

[출처 : 한국영유아보육학회 - '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' 2021]

3. 마포구 어린이집 현황

(2023. 4. 30현재)

구분	계	구립	법인외	민간	가정	협동	직장
시설수	181	85	4	25	45	4	18
보육현원	5,815	3,465	95	987	554	108	606
보육교사	1,437	803	28	205	200	30	207